

서식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2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청년)주거급여 수급여부	(○, ×)	보장기관 (시군구)	휴대전화
	지자체 월세지원 기 수혜여부	(○, ×)	해당 지자체	전자우편

청년 독립가구 가족구성 1)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세대주와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학력· 재학여부	직업
	배우자 관계 ²⁾ ([]법륜혼 []사실혼 []사실상 이혼)					
원가구						

기주 조건 등	주택 유형		임차보증금	월세	임차면적	비고 ³⁾
	주택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영업겸용 단독주택 ☐ 다중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원	원	m ²	
	준주택	☐ 오피스텔 ☐ 고시원 ☐ 기숙사 ☐ 노인복지주택	임대차기간	. . . ~ . . .		
	기타	☐ 쪽방 ☐ 여관·여인숙 ☐ 기타()	계약일자	. . .	전대차 여부 (○, ×)	

지급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⁴⁾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 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작성방법

- 청년독립가구: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해당자에 한함
-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주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청년 본인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조사업자(시·군·구)가 확인하는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등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조사업자(시·군·구청장)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주거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월세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주거급여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사업자등록정보, 임대보증금 포함)·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유의사항	확 인 (√ 체크)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주거급여 수혜여부 결정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여부를 결정하며, 월세지원금 지급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5.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월세지원을 받은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청년이 미혼인 경우: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이 기혼인 경우: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5.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및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인 경우에 한함)
	6. 최근 3개월내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8. 부채 증빙 서류